

도시관리계획(약수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54호(1996.6.13)로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-453호(2009.11.19)로 변경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65호 (2014.10.23)로 변경결정 고시된 우리구 약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』 제30조 제5항에서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 항에서 제5항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약수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중구청(도심재생과), 서울특별시(도시관리과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5년 8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결정 취지

- 중구 신당동 357-12, 431-12, -14, -15번지의 약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- 획지의 규모와 조성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

2.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경미한 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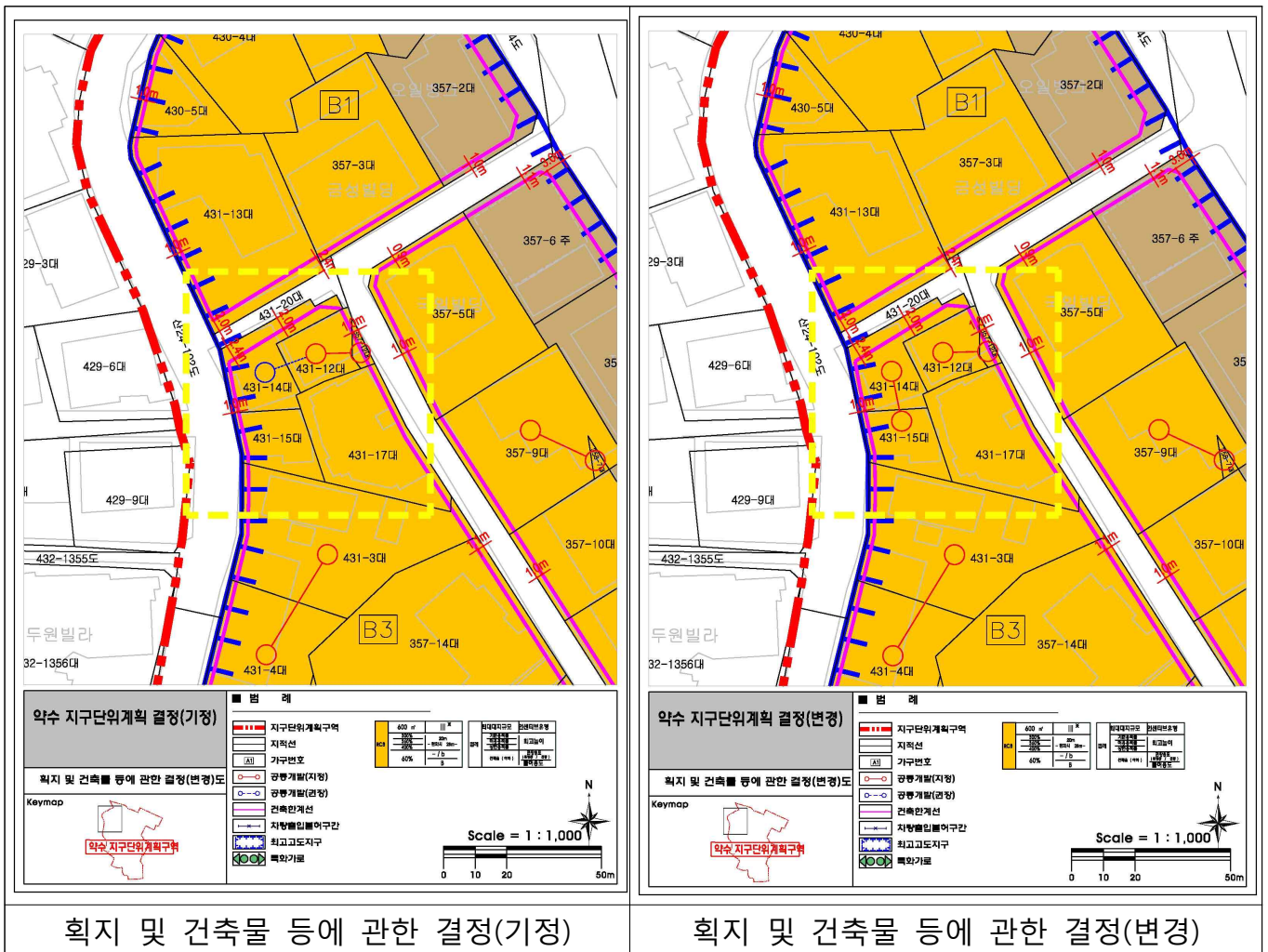
○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가구 번호	번호	면적	구역	필지		비고		
					위치	면적(m ²)			
기정	B3	1	272	RC8	신당동	357-12	4.0	공동개발 지정	공동개발 권장
					신당동	431-12	96.0		
					신당동	431-14	172.0		
					신당동	431-15	122.0		
변경	B3	1	100	RC8	신당동	357-12	4.0	공동개발 지정	
					신당동	431-12	96.0		
		5	294	RC8	신당동	431-14	172.0	공동개발 지정	
					신당동	431-15	122.0		

○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신당동 357-12, 431-12, 431-14, 431-15	신당동 431-12호외1(357-12, 공동개발지정)와 431-14호의 공동개발권장을 해제하고 신당동 431-14호와 431-15호 공동개발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당동 431-14호와 431-15호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의사에 따라 공동건축할 수 있도록 변경

3. 관계도면

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86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